

#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5년 5월 4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5월 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19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(2005. 5. 16) 상정
- 제119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(2005. 5. 16) 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지식산업과장 강 덕 면)

가. 제안이유

- 우리시의 지역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식기반산업 지역 혁신체제를 구축·운영하기 위하여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재구성하고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.  
(안 제8조)
  -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
  -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7인 이내로 구성하되, 담당국장, 시의회 의원, 지식기반산업에 관한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

- 위원회 기능을 정함.(안 제9조 신설)
  - 지식기반산업 및 지역혁신체제 육성 관련 건의 및 심의
  - 지식기반산업분야 정책과제 발굴 및 건의
  - 기타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관련한 사항 등
-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하며,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0조 및 제11조 신설)
-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,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2조 신설)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 위원을 17명으로 구성한다고 하였는데 클러스터 구성 차원에서 볼 때 위원회 구성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.	○ 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클러스터 차원에서 위원수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의함.
○ 위원회에 다양한 전문가의 위촉 차원에서 25명 정도로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?	○ 다양한 분야 인사의 참여를 위하여 25명의 위원 위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됨.

### 4. 토론요지

#### 가. 찬성토론

- 없 음

#### 나. 반대토론

-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과 자문을 위하여 위원수를 25명 정도로 확대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됨.

5. 심사결과

수정의결

6. 소수의견

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음

#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제373호
의결 년월일	2005. 5. 19 (제119회)

제안년월일 : 2005년 5월 16일

제안자 : 기획재정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을 포함 17인 이내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보다는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 참여 인원을 확대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위원회 위원 “17인”을 “25인”으로 조정함  
(안 제8조제2항)

#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제2항 중 “17인”을 “25인”으로 한다.

## 신 · 구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8조(부천시지식기반 산업육성위원회) ① (생 략) ② <u>위원회의 기능은 부천시벤처 기업육성 및 지원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부천시중·소벤처 기업 육성위원회가 대행 한다.</u> ③ <u>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및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.</u></p>	<p>제8조(부천시지식기반 산업육성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위원회는 위원장 1 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.</u>  ③ <u>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 장은 위원중에서 호 선하며, 위원은 지식 기반산업 업무 담당 국장과 시의회 의원, 지식기반산업에 관한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.</u> ④ <u>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</u></p>	<p>제8조(부천시지식기반 산업육성위원회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 ..... .....25인..... ..... ③ (개정안과 같음)  ④ (개정안과 같음)</p>

[수정안 포함]

##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”를 “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지식기반산업업무 담당국장과 시의회 의원, 지식기반산업에 관한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.

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.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하고, 제9조 내지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제3조 내지 제7조에 규정한 지식기반산업 및 지역혁신체제 육성 관련 사업

2. 지식기반산업분야 정책과제 발굴 및 건의

3. 기타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

제10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.

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(회의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, 품위손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

2.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

제13조(비밀엄수)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14조(일비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「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의 규정에 의하여 일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15조(종전의 제9조)중 “지방재정법·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·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”를 “「지방재정법」·「국가균형발

전특별법」·「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·「부천시 중소기업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”로 한다.

제2조중 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”을 “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”로, “영상진흥기본법”을 “「영상진흥기본 법」”으로 하고, 제5조제2항중 “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”를 “「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”로 하며, 제7조중 “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”를 “「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”로 한다.

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의 개정) 부천시벤처기업육 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”를 “부천시 벤처 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4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5조제3항중 “지식기반산업과 벤처기업”을 “중소·벤처기업”으 로 한다.

제1조중 “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”을 “「벤처기업육성에

관한 특별조치법」”으로, “지방자치법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 하고, 제5조중 “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”을 “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”으로 하며, 제8조중 “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”를 “「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”로 하고, 제20조중 “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”를 “「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”로 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<u>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</u></p> <p>제8조(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)</p> <p>① (생   략)</p> <p>②위원회의 기능은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부천시중·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가 <u>대행한다.</u></p> <p>③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 및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<u>아니하다.</u></p> <p>&lt;신   설&gt;</p>	<p><u>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</u></p> <p>제8조(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)</p> <p>① (제1항과 같음)</p> <p>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지식기반산업업무 담당국장과 시의회 의원, 지식기반산업에 관한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.</p> <p>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&lt;신설&gt;</p>	<p>제9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제3조 내지 제7조에 규정한 지식기반산업 및 지역혁신체제 육성 관련 사업</li> <li>2. 지식기반산업분야 정책과제 발굴 및 건의</li> <li>3. 기타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</li> </ol>
<p>&lt;신설&gt;</p>	<p>제10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.</p> <p>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제11조(회의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</p> <p>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&lt;신설&gt;</p>	<p>제12조(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, 품위손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</li> <li>2.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</li> </ol>
<p>&lt;신설&gt;</p>	<p>제13조(비밀엄수)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제14조(일비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「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의 규정에 의하여 일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</p>
<p>제9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·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·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준용한다.</p>	<p>제15조(준용) ----- ----- 「지방재정법」·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·「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· 「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-----.</p>
<p>제10조(시행규칙) (생략)</p>	<p>제16조(시행규칙) (중전의 제10조와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b>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</b></p> <p>제14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~3. (생 략)</p> <p>4. <u>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</u></p> <p>5. <u>만화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행·재정 지원</u></p> <p>6. (생 략)</p> <p>제15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생 략)</p> <p>③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<u>지식기반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u></p> <p>④ (생 략)</p>	<p><b>부천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</b></p> <p>제14조(위원회의 기능) ----- -----.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5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----- <u>중소·벤처기업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